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88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돈화문국악당은 정재(궁중무용), 정악(궁중음악) 중심의 국악 전문공연장으로

나. 문화예술경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 (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돈화문국악당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룡동 12-2 외 6(부지면적 845.6㎡)
- 시설규모 : 지하 3층 / 지상 1층 (연면적 1,778.98㎡)
- 공간구성 : 공연장, 야외마당, 사무실, 연습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1.1. ~ 2024.12.31.

○ 위탁업무

-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 소요예산 : 연간 약 2,200백만원

○ 수탁기관 : (주)인사이트모션 (전기 위탁기간: '19.2.15~'21.12.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1항, 3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사무의위탁) 1항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3호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2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정의정(☎2133 -2577)